|  |  |  |
| --- | --- | --- |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 2011년 53호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국판발[2011]6호) 및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 공중의 의견을 널리 청구한 기반에서, 본 부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잠행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8호)를 완벽화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현재 이를 공표하고, 2011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8월 25일  **제1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에서 명확화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개 또는 2개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 인수합병을 실시할 경우, 공동 또는 그 중 하나의 외국투자자(이하 ‘신청인’)를 선정하여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조** 지방상무주관부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의 몇 가지 규정》,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거래신청 수리 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지만,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한다. 또한 5업무일 내에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한편, 관련 정황을 상무부에 보고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무원 관련 부서, 전국 업종협회, 동업자기업 및 전/후방기업이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정황 설명서(인수합병거래 기본정황과 국가안전에 대한 구체영향 등 포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이익관계자에게 관련 설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한다면, 상무부는 5업무일 내에 건의를 연석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연석회의에서 확실히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연석회의 결정에 근거, 외국투자자가 본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4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정식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경내기업 인수합병의 절차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부에 상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정황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해당 예약상담은 정식신청을 제출하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상담정황은 제약력과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식신청을 제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정식신청 제출 시, 신청인은 다음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대표가 체결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서와 거래정황 설명서  (2) 공증과 법에 따른 인증을 득한 외국투자자 신분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및 자본신용증명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수권대표 위임서, 수권대표 신분증명서  (3) 외국투자자 및 특수관계기업(실제통제인과 행동일치인 포함) 정황설명서, 관련 국가 정부와의 관계 설명서  (4) 피인수합병 경내기업 정황설명서, 정관, 영업집조(사본), 직전년도 감사를 통과한 재무제표, 인수합병 전후 조직구조도, 투자기업의 정황설명서와 영업집조(사본)  (5) 인수합병 후 설립예정인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정관 또는 파트너쉽협의 및 각 주주가 위임예정인 동사회(이사회) 구성원, 임용한 총경리 또는 파트너 등 고급관리인원 명단  (6) 지분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지분양도협의 또는 외국투자자가 인수하는 경내기업 증자협의, 피인수합병 경내기업 주주결의서, 주주대회(주주총회) 결의서, 및 상응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자산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경내기업 권력기구 또는 재산권 보유자의 자산매각 동의결의서, 자산구매협의(매입할 예정인 자산리스트와 상황 포함), 각 협의자 정황, 및 상응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이후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회 (주주총회), 동사회(이사회) 결의서, 파트너쉽 업무집행에 대한 영향 설명서, 기타 경내기업의 경영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통제권을 외국투자자 또는 경내외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도록 초래한 정황설명서, 및 상술한 정황과 관련되는 협의 또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9)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제6조** 신청인이 제출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문건이 완전하고 법정요구에 부합될 경우, 상무부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한다면, 상무부는 15업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후 5업무일 내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처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함)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5업무일 내에,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를 실시하지 못하며, 지방상무주관부처는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비준하지 못한다. 15개 업무일 이후, 상무부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서면의 심사의견을 수취한 후, 5업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신청인(또는 당사자), 인수합경 거래를 책임진 지방상무주관부처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에 대한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관리권한이 있는 관련 주관부처에서 인수합병 거래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수합병 거래가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수합병거래를 조정하지 않거나, 신고문건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인수합병 거래를 신청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  (3)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석회의 심사의견에 근거,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당사자의 거래를 종료하거나, 관련 지분이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기타 유효조치를 취하여, 인수합병 행위의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을 해소한다.  **제8조** 상무부가 연석회의에 심사청구를 제출한 후, 신청인이 신고문건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 또는 연석회의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보충하거나 수정할 경우, 상무부에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보고서 및 관련 문건을 접수한 후, 5업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제출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제영향의 각도에서 인수합병 거래가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질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며, 대리보유, 신탁, 다차원 재투자, 대출, 협의통제, 경외거래 등 방식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10조**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연석회의 심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연석회의 심사결과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일 이후에 인수합병 거래를 조정하거나 관련 협의문건을 수정하거나 경영활동을 변경하거나 기타 변화(경외실제통제인 변화 등 포함)가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인수합병 거래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에서 명확화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관련 거래와 활동을 종료하고, 외국투자자는 본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인수합병 안전심사에 참여한 상무주관부처와 관련 단위, 인원은 인수합병 안전심사 중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기타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  |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  **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  商务部公告2011年第53号  　　根据《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国办发[2011]6号）以及外商投资相关法律法规，在广泛征求公众意见的基础上，我部对《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有关事项的暂行规定》（商务部公告2011年第8号）进行了完善，形成了《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现予以公布，自2011年9月1日起实施。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〇一一年八月二十五日  **第一条**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属于《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明确的并购安全审查范围的，外国投资者应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  　　两个或者两个以上外国投资者共同并购的，可以共同或确定一个外国投资者(以下简称申请人)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  **第二条** 地方商务主管部门在按照《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等有关规定受理并购交易申请时，对于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但申请人未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申请的，应暂停办理，并在5个工作日内书面要求申请人向商务部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同时将有关情况报商务部。  **第三条**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国务院有关部门、全国性行业协会、同业企业及上下游企业认为需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可向商务部提出进行并购安全审查的建议，并提交有关情况的说  明(包括并购交易基本情况、对国家安全的具体影响等)，商务部可要求利益相关方提交有关说明。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的，商务部应在5个工作日内将建议提交联席会议。联席会议认为确有必要进行并购安全审查的，商务部根据联席会议决定，要求外国投资者按本规定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  **第四条** 在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正式申请前，申请人可就其并购境内企业的程序性问题向商务部提出商谈申请，提前沟通有关情况。该预约商谈不是提交正式申请的必经程序，商谈情况不具有约束力和法律效力，不作为提交正式申请的依据。  **第五条** 在向商务部提出并购安全审查正式申请时，申请人应提交下列文件：  　　（一） 经申请人的法定代表人或其授权代表签署的并购安全审查申请书和交易情况说明；  　　（二） 经公证和依法认证的外国投资者身份证明或注册登记证明及资信证明文件；法定代表人身份证明或外国投资者的授权代表委托书、授权代表身份证明；  　　（三） 外国投资者及关联企业(包括其实际控制人、一致行动人)的情况说明，与相关国家政府的关系说明；  　　（四） 被并购境内企业的情况说明、章程、营业执照(复印件)、上一年度经审计的财务报表、并购前后组织架构图、所投资企业的情况说明和营业执照(复印件)；  　　（五） 并购后拟设立的外商投资企业的合同、章程或合伙协议以及拟由股东各方委任的董事会成员、聘用的总经理或合伙人等高级管理人员名单；  　　（六） 为股权并购交易的，应提交股权转让协议或者外国投资者认购境内企业增资的协议、被并购境内企业股东决议、股东大会决议，以及相应资产评估报告；  　　（七） 为资产并购交易的，应提交境内企业的权力机构或产权持有人同意出售资产的决议、资产购买协议(包括拟购买资产的清单、状况)、协议各方情况，以及相应资产评估报告；  　　（八） 关于外国投资者在并购后所享有的表决权对股东会或股东大会、董事会决议、合伙事务执行的影响说明，其他导致境内企业的经营决策、财务、人事、技术等实际控制权转移给外国投资者或其境内外关联企业的情况说明，以及与上述情况相关的协议或文件；  　　（九） 商务部要求的其他文件。  **第六条** 申请人所提交的并购安全审查申请文件完备且符合法定要求的，商务部应书面通知申请人受理申请。  　　属于并购安全审查范围的，商务部在15个工作日内书面告知申请人，并在其后5个工作日内提请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以下简称联席会议)进行审查。  　　自书面通知申请人受理申请之日起的15个工作日内，申请人不得实施并购交易，地方商务主管部门不得审批并购交易。15个工作日后，商务部未书面告知申请人的，申请人可按照国家有关法律法规办理相关手续。  **第七条** 商务部收到联席会议书面审查意见后，在5个工作日内将审查意见书面通知申请人(或当事人)，以及负责并购交易管理的地方商务主管部门。  　　（一） 对不影响国家安全的，申请人可按照《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等有关规定，到具有相应管理权限的相关主管部门办理并购交易手续。  　　（二） 对可能影响国家安全且并购交易尚未实施的，当事人应当终止交易。申请人未经调整并购交易、修改申报文件并经重新审查，不得申请并实施并购交易。  　　（三）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行为对国家安全已经造成或可能造成重大影响的，根据联席会议审查意见，商务部会同有关部门终止当事人的交易，或采取转让相关股权、资产或其他有效措施，以消除该并购行为对国家安全的影响。  **第八条** 在商务部向联席会议提交审查后，申请人修改申报文件、撤销并购交易或应联席会议要求补交、修改材料的，应向商务部提交相关文件。商务部在收到申请报告及有关文件后，于5个工作日内提交联席会议。  **第九条** 对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应从交易的实质内容和实际影响来判断并购交易是否属于并购安全审查的范围；外国投资者不得以任何方式实质规避并购安全审查，包括但不限于代持、信托、多层次再投资、租赁、贷款、协议控制、境外交易等方式。  **第十条**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未被提交联席会议审查，或联席会议经审查认为不影响国家安全的，若此后发生调整并购交易、修改有关协议文件、改变经营活动以及其他变化（包括境外实际控制人的变化等），导致该并购交易属于《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明确的并购安全审查范围的，当事人应当停止有关交易和活动，由外国投资者按照本规定向商务部提交并购安全审查申请。  **第十一条** 参与并购安全审查的商务主管部门、相关单位和人员应对并购安全审查中的国家秘密、商业秘密及其他需要保密的信息承担保密义务。  **第十二条** 本规定自2011年9月1日起实施。 |